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동북아역사재단 임원 해임에 관한 규정 신설 〉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34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동북아역사재단 임원 해임에 관한 규정 신설	2
※ 참고자료	
- 동북아역사재단 임원 현황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9. 26.
3. 회 부 일 : 2025. 9.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임원의 수, 임명과 결격사유 및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회가 임명권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을 요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동북아역사재단 임원 해임에 관한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동북아역사재단 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의 사유 발생 시 임명권자가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임원의 해임) ① 임명권자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이사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나. 검토의견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 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임. 동 법률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임¹⁾.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등 10인이 있음²⁾.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

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동북아역사재단 정관」

제6조(임원의 임명) ④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다만, 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외교부차관

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감사 1인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함³⁾⁴⁾.

< 재단의 임원 구성 개요 >

구분		임명 주체	인원
이사	이사장	대통령	20인 이내 (당연직 이사 10인)
	당연직 이사	—	
	당연직 이사 외	교육부장관	
감사		교육부장관	1인

같은 법 제8조는 임·직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⁵⁾. 또한 「동북아역사재단 정관」에서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심신상실 등으로 인

-
4. 통일부차관
 5. 법무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문화체육관광부차관
 8. 해양수산부차관
 9.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10. 한국학중앙연구원장

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 ②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⑤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4) 현 시점의 임원 현황은 ‘참고자료: 동북아역사재단 임원 현황’ 참조.

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등에 재단이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⁶⁾.

□ 개정안은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임명권자가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사장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즉, 현재 정관에서도 임원의 해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해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대통령의 이사장 해임권을 명백히 하며, 교육부장관의 이사장 해임건의권을 신설하려는 것에서 차이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 임원의 해임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법률에 마련되어 위원회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임원의

6) 「동북아역사재단 정관」

제10조(임원의 해임) ① 재단은 그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법, 법시행령,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게 손해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3. 심신상실 기타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재단의 임원이 제9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성실한 직무수행을 일정 수준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사한 입법례로,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은 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대통령의 이사장 해임권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권을 규정하고 있음.⁷⁾
- 다만, 해임의 사유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임의적 판단의 여지가 존재할 우려가 있음. 이 경우, 해임 결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또는 절차적 통제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참고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기념관법」 등에서도 유사하게 임원 등의 해임·해촉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및 정부위원회 등에서 심사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의 심사 경과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 대통령은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회계부정 등이 발견된 때
2. 재단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사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사장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개정안과 유사 취지의 법률안 >

연번	의안번호	법률안명	대표발의자	소관 위원회
1	13332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교육위원회
2	1333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정무위원회
3	133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행정안전위원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기존 법령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임원의 수, 임명과 결격사유 및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해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참 고

동북아역사재단 임원 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임 기	비 고
1	이 사 장	박지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3.12.29~26.12.28	상임
2	사무총장	정용상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24.8.8~27.8.7	상임
3	임명직 이사	공석				
4	임명직 이사	공석				
5	임명직 이사	공석				
6	임명직 이사	공석				
7	임명직 이사	공석				
8	임명직 이사	공석				
9	임명직 이사	공석				
10	임명직 감사	신동승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25.3.20~'27.3.19	비상임

※ 당연직 이사(10人) : 기획재정부·교육부·통일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해수부 차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자료: 교육부